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김환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모법이 「특허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조례명을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개정

나. 발명진흥법 제정과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리.

- 「특허법」 제39조 및 40조→「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 (안 제1조)
-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안 제10조)

#### 다. 불필요한 조항의 내용 정비.

- 불필요한 용어정의 삭제(현행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4호까지)
- 위원회 기능의 통합(현행 조례 제3조와 제4조) 등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항 표시(①, ② --)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쓰기로 함.
- “제○조의 규정에 의한/의하여”를 “제○조의 규정에 따른/따라”로 함.
- 그 밖에 일본식 표현(~에 관하여 등), 어려운 용어(통할→총괄 등)의 정비 등

### 4. 검토결과

김환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보호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특허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리로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모순을 정비하고, 둘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필요한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